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01,564,344	21,046,930
일반회계	619,304,432	18,579,133
특별회계	82,259,912	2,467,797
공기업특별회계	36,647,564	1,099,427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6,647,564	1,099,427
기타특별회계	45,612,348	1,368,370
의료보호특별회계	466,127	13,984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,199,139	35,974
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,847,943	55,438
수질개선특별회계	42,099,139	1,262,97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[채무부담행위사업] "해당없음"

제 4 조 [계속비사업조서] "불임"과 같다.

제 5 조 [이월사업조서]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818,84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